

의안번호	2214562
의 퇴 인	이용우의원
회 답 일	2026.1.12.
추계번호	25B6503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0조의2(과징금)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. 이 경우 제3호·제4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는 것으로 봄(제1항) 1. 제40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: 총 공사비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. 제40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: 총 공사비의 100분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.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, 원상복구 등 조치 명령을 하더라도 그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: 총 공사비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4.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,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, 국민경제,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: 총 공사비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	재량·의무규정
2	안 제76조(과태료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제1항) 1. <삭 제> 2. <삭 제>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40조의2(과징금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76조(과태료)	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법 제40조제1항¹⁾에 따른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 수준에 따라 총 공사비의 일정비율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임

[표 1] 주요 개정 사항 정리

구분	현행	개정안
과징금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,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, 국민경제,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. 이 경우 제3호·제4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는 것으로 봄 1. 제40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: 총 공사비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. 제40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: 총 공사비의 100분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.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, 원상복구 등 조치명령을 하더라도 그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: 총 공사비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4.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,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, 국민경제,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: 총 공사비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
과태료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. 제40조제1항(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	삭제

1) 제40조(조치명령 등)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.

	2.제40조제4항(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	
--	---	--

자료: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가 협의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과징금으로 변경할 경우, 현시점에서는 제재 조치 변경에 따른 위반행위의 증감 및 총 공사비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과징금 수입의 증가 및 과태료 수입의 감소 등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- －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및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건수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
(단위: 건, 만원)

구분		2023	2024	2025
과태료	부과건수	3	2	0
	부과금액	5,000	5,100	0
과징금	부과건수	0	0	0
	부과금액	0	0	0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